

○보험계약 및 인적사항

※ 피보험자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실손 의료보험 상품에 대하여 보험료 할인제도를 운영 2009년 10월 이후 청약상품 중 2014년 04월 이후 강신을 하거나 2014년 4월 이후 청약 상품에 허가

○ 다른 보험회사 계약사항 확인(손해보험, 생명보험, 공제보험 및 단체보험)

해당사항 있음

해당사항 없음 ※ 해

4. 사항에 체크(V)

보현회사 삼성호재 현대하상 DB손보 KB손보 한화손보 흥국화재 롯데손보 농협손보 기타(생보 단체 골목 등 기재)

※ 실손의료비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등이 실손보상 담보는 다른 회사에도 가입되어 있는 경우 비례보상 처리되므로 타사 계약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사고 관리사항

※ 아래의 사고율형 4개 중 1개만 체크하세요

※ 확인된 사고내용과 관련하여 당시에 정상 유지 중인 보험계약이 담보하는 모든 보험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일부 보험금 항목만 수령을 원하시는 경우 "일부청구"란에 기재 부탁드립니다.)

※ 세부 항목들을 상세히 체크. 기재시 보다 신속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 보험금 수령 계좌

자동이체 계좌 요청

(자동이체 계좌가 보험금 수익자 본인계좌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자동이체 계좌 체크시 아래의 계좌번호를 기재할 필요 없음)

금융기관명	예금주명	예금주 주민번호	피보험자와의 관계
계좌번호 (숫자만 기재) ►			

※ 자동이치 계좌 외 별도 계좌 작성 시 반드시 금융기관명과 계좌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고 계좌 작성 오류로 인한 책임은 회사에 있지 않은 바 작성에 익숙하시기 바랍니다.

※ 수원자 이외의 타인 계좌로 송금 받으시려면 별도의 「위임장」 작성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위 기재한 보험금 청구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본인은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문] 통하여 보상 절차에 관한 정보를 안내받고 이를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청구자 본인은 상기내용에 사실과 다른 것이 있거나 관련 서류 또는 증거가 위조·변조된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권을 상실할 수 있으며 동시에 그에 따른 모든 법적책임을 부담할 것을 확인합니다.
-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한동 대체보험그리고 또는 마이기획그리고가 가능성이 우려되며 경고되어 결론적으로 고지사에 대해서 대체보험그리고의 으로서의 충당성이 동의합니다.



작성일자	년	월	일	작성자	[법정대리인]	의	▶	성명	◀	▶	서명	◀
------	---	---	---	-----	-------------	---	---	----	---	---	----	---

※ 전스하시 청구 서르는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부족 기가 조금 후 파기해 니다)

※ 미성년자와 같이 친구와 함께 서면이나 다른 사람의 일방적인 의사에 반항하지 않는다며 부모 중 한명이 부모 곤동면이란 돈이 민 서면할 수 있습니다.

※ 보험사기(고의사고·화재사고·화재위험자재·단자재·사고·후보기인가!)는 법적처벌의이며 혐의에 있어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청구를 위한 개인(신용)정보 처리 및 「인의심사」 등의 동의를 거부한 경우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불기한 수순이 있습니다.

귀하는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및 조회, 제공에 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이외의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면, 본 동의는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수적인 사항이므로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 관련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o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험사고·보험사기 조사 및 보험금지급·심사(손해사정 또는 의료자문 포함) 보험금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 및 교통사고 처리내역 발급·간소화 서비스 민원처리 및 분쟁대응 금융거래 관련 업무(보험금 등 출수납을 위한 금융거래 신청·잔존물대위 구상업무 관련)
보유 및 이용기간	<p>동의일로부터 거래 종료 후 5년까지 (단 거래종료 후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보험금지급, 금융 사고조사, 보험사기 방지, 적발,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보유 이용하며 별도 보관) 위 보유 기간에서 거래 종료일이란 "(①보험계약 만기 해지, 취소, 철회일 또는 소멸일 및 ②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일(상법 제662조), ③채권채무 관계 소멸일 중 가장 나중에 도래한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한 날)"을 말한다. 단, 미지급/미환급금이 남아 있거나 수사·소송이 진행된 경우 거래종료로 보지 않음(이하 동일)</p>

2. 수집·이용 항목

고유식별정보	<p>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p> <p>위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input checked=""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동의함</p>
민감정보	<p>피보험자의 질병상태에 관한 정보(진료기록, 상병명, 기왕증 등), 보험사고 조사(보험사기 포함) 및 손해사정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경찰, 공공·국가기관,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본인의 위임을 받아 취득한 각종 조사서, 증명서, 진료기록 등에 포함된 개인(신용)정보 포함)</p> <p>위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input checked=""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동의함</p>
개인(신용)정보	<p>성명, 주소, 생년월일, 이메일, 유무선전화번호, 성별, 국적, 직업, 피보험자와 수의자의 관계, 국내거소신고번호</p> <p>금융거래 업무 관련 정보(보험금 지급계좌 등), 보험계약정보(상품종류, 기간, 보험가입금액 등), 보험금정보(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등)</p> <p>위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input checked=""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동의함</p>

3.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한국신용정보원 보험회사 등: 생명·손해보험회사, 국내·재보험사, 국외·재보험사, 공제사업자, 체신관서(우체국보험) 금융거래기관: 계좌개설 금융기관, 금융결제원 계약관계자: 피보험자, 보험금 청구권자, 계약관계자, 자정, 정보수신인 보험협회 등: 생명·손해보험협회 공공기관 등: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국세청, 보험요율산출기관 등 <p>법령상 업무 수행기관(위탁사업자 포함)</p>
제공 목적	<ol style="list-style-type: none">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개인(신용)정보 조회, 신용정보의 집중관리 및 활용 등 법령에서 정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수행, 교통사고처리내역발급·간소화 서비스 보험회사 등: 중복보험 확인 및 비례보상, 재보험금 청구, 보험사고조사(보험 사기조사 포함) 및 손해사정서비스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업무 금융거래기관: 금융거래 업무(보험금 등 출수납) 계약관계자: 손해사정내용 관련 정보 제공 보험협회: 보험금 지급·심사 관련 업무지원(보험금 청구서류 접수 대행 서비스 등) 공공기관 등: 법령에 따른 수행업무(위탁업무 포함)
보유 및 이용기간	<p>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관련 법령상 보존기간을 따름)</p>

* 외국 재보험사의 국내지점이 재보험계약 가입 판단 지원, 보험계약 공동인수 지원 업무를 위탁하기 위한 경우 별도의 동의 없이 외국 소재 본점에 귀하의 정보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제공 항목

국내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위 고유식별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민감정보	피보험자의 질병상에 관한 정보(진료기록, 상병명, 기왕증 등), 보험사고 조사(보험사기 포함) 및 손해사정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경찰, 공공·국가기관,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본인의 위임을 받아 취득한 각종 조사서 증명서, 진료기록 등에 포함된 개인(신용)정보 포함) 위 민감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국외	개인(신용)정보	성명, 주소, 생년월일, 이메일, 유무선전화번호, 성별, 국적, 직업, 피보험자와 수의자의 관계, 국내거소신고번호, 금융거래 업무 관련 정보(보험금 지급 계좌 등), 보험계약 정보(상품 종류, 기간, 보험가입금액 등), 보험금 정보(보험금 지급 사유, 지급금액 등)
	민감정보	피보험자의 질병상에 관한 정보(진료기록, 상병명, 기왕증 등), 보험사고 조사(보험사기 포함) 및 손해사정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 위 민감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 업무위탁을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별도의 동의 없이 업무수탁자에게 구하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www.meritzfire.com]에서 확인 가능)

3. 조회에 관한 사항

조회 대상 기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생명·손해보험협회, 금융거래기관, 실명/본인인증 기관(신용정보회사 및 통신사) 등
조회 목적	1.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보험사고·보험사기 조사 및 보험금 지급 심사, 교통사고 처리 내역 발급 간소화 서비스 2. 생명·손해보험협회: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보험금 청구 서류 접수 대행 서비스 3. 금융거래기관: 보험금 지급 계좌 예금주 확인 4. 실명/본인인증 기관: 홈페이지·모바일 실명 인증 및 본인 인증
조회 동의의 효력기간	보험거래 종료 후 5년까지 동의의 효력이 지속됩니다. (단, 거래 종료 후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보험금 지급, 금융 사고 조사, 보험사기 방지, 적발, 민원 처리,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보유 이용하며 별도 보관)

4. 조회 항목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위 고유식별정보 조회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민감정보	피보험자의 질병상에 관한 정보(진료기록, 상병명, 기왕증 등), 교통법규 위반 정보, 교통사고 조사 기록(당사의 요청에 따라 보험요율 산출 기관이 경찰청으로부터 제공 받은 정보) 위 민감정보 조회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개인(신용)정보	성명, 국내거소신고번호, 면허의 효력에 관한 정보
└ 일반개인정보	보험계약 정보(상품 종류, 기간, 보험가입금액 등), 보험금 정보(보험금 지급 사유, 지급금액 등, 보험금 지급 및 사고 정보는 과거 및 현재의 당사자 자동차 보험 처리 내용을 포함 함)
└ 신용거래정보	위 개인(신용)정보 조회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가 서명하며,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면 부모 중 일방이 부모 공동 명의로 동의 및 서명할 수 있습니다.

작성일자	작성자				
년	월	일	[의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인)



법정대리인(친권자) 1인이 서명한 경우

본인은 다른 법정대리인(친권자)
1인과 힘의 힘에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합니다.

동의 서명

[의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인)

▣ 보험금 청구관련 안내

- 보험금을 받으실 통장이 피보험자 본인 명의가 아닌 경우, 별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단,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위임장 없이 친권자(부모)계좌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 확인서 제출)
- 상기 서류 이외에도 추가서류를 요청 드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경우에 따라 손해사정을 위한 방문조사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담당자가 별도로 연락을 드립니다.

▣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금청구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단, 2015. 03.12 이전 청구사유 발생건은 2년 이내 접수하셔야 합니다.)

▣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

- 사고접수 완료시 보상처리 담당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SMS 또는 카카오톡으로 안내드립니다.
- 보상처리 문의사항 및 담당자 확인 등은 오전9시~오후6시에 당사 고객센터(1566-7711)로 문의하시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예상 지급기일은 상해·질병사고는 최종 서류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재물·배상책임사고는 지급보험금액 확정일로부터 7일입니다.



- 사고접수
- 보험금청구

- 청구서류안내
- 청구서류접수

- 손해조사
- 보험금심사

- 보험금결정
- 보험금지급안내

보험금지급

❶ 손해사정사 선임 및 조사

- 고객님은 보험사고의 손해사정을 위해 손해사정사 선임이 가능하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등으로부터 손해사정사 선임의사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내에 보험계약자 등에게 동의여부를 회신하지 않은 경우 선임요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에 소속된 손해사정사 또는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이 체결된 손해사정업자가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①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안내일로부터 3영업일 내에 선임 관련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② 손해사정 지연시 사고현장 훼손·손해 확대 등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선임 관련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③ 위탁계약이 체결된 손해사정업자가 업무를 진행한다는 사실에 대해 보험계약자 등의 동의를 얻은 경우
- 최초 선임 관련 안내일로부터 3영업일 내에 손해사정사 선임 여부 회신 기한 연장을 요청한 경우에 한해 선임 관련 의사 표시 기한을 안내일로부터 10영업일로 할 수 있습니다. 단, 표준동의기준의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임 관련 의사표시 기한을 연장하지 아니합니다.
- 고객님께서는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아래의 경우에만 그 비용을 회사가 부담합니다.
① 손해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게 손해사정자의 선임의사를 통보하여 회사의 동의를 얻은 때
②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이 경과 하여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③ 아래의 경우에는 고객님께서 손해사정사 비용을 부담합니다.
① 보험회사가 고용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결과에 보험계약자 등이 승복하지 아니한 때
②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와는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하고자 하는 손해사정사가 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의 요건 중 하나 이상 충족하지 않거나, 표준동의기준의 제1호 내지 제7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손해사정사의 선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서를 선임한 이후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이 때 "표준동의기준의 제1호 내지 제7호"를 "제1호 내지 제5호"로 봅니다.
- 보험계약자가 선임한 손해사정사는 손해사정표준업무기준에 근거하여 손해사정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려고 보험회사에 알리는 경우 보험회사는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표준동의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요청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손해사정업자는 보험업법 제 189조(손해사정사의 의무 등)에 의거하여 손해사정이 완료된 후 손해사정보고서를 교부하여 드립니다.
단, 별도의 손해사정업무(사고현장조사, 병원방문조사 등)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보험금이 지급 된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❷ 장해진단서 제출 시 유의사항

- 장해진단서를 제출하시는 경우에는 3차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요청드리며, 병원 진단 전에 보상담당자와 협의하는 것이 신속한 보험금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3차 의료기관 : 500병상 이상의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❸ 의료심사

- 상해 및 질병보험 등에서는 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여부와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진단서, 치료관련 기록 등 제출하신 자료를 기초로 전문의에 의한 의료심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지급사유에 합의가 이루어 지지 못할 때에는 보험수의자와 회사가 함께 제 3자를 정하고, 그 제 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 3자는 의료법 제 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❹ 보험사간 치료비 분담 지급(비례분담 적용) 등

- 상해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실비를 보상하는 상품에 복수로가입하신 경우, 보험약관에 따라 비례분담원칙을 적용하여 보험계약별로 분할하여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접수대행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타사에 접수대행이 가능하며 다른 회사에 자료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 하셔야 합니다.
단, 다른 보험사의 보험금 심사단계에서의 사고조사 등을 사유로 접수대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상기의 접수대행을 신청하지 않거나 다른 보험사의 접수대행 거절이 있을 경우, 다른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 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다른 보험사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계약은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를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❺ 실손형 보험의 비례보상 안내

- 「실제 발생하는 손해만을 보상하는 실손형 보험」은 다른 보험 회사의 가입여부에 따라 비례보상원칙을 적용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실제 발생하는 손해만을 보상하는 실손형 보험」이란 실손의료비보험, 자동차사고와 관련된 변호사선임비용·처리지원금을 보상하는 보험, 자동차보험 중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다른 자동차 운전 및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를 보장하는 보험, 별금을 보상하는 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 민사소송법률비용 및 의료사고법률비용을 보상한 보험, 홀인원비용을 보상하는 보험, 가전제품수리비용을 보상하는 보험 등을 말합니다.

❻ 보험금 지급안내 및 심사절차 조회방법

- 보험금 청구관련 지급/부지급 사항은 문자메세지(SMS, LMS, 카카오톡), 이메일 안내장으로 안내되며, 메리츠화재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연된 경우 약관 내용에 따라 지연이자를 산정 지급하여 드립니다.
- 메리츠화재 홈페이지(www.meritzfire.com)에 접속하시면 계약내용, 사고처리 진행경과 및 지급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❼ 재심사 청구

- 보험금 지급심사결과 청구보험금이 정상지급 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부지급 또는 감액지급 등), 이 경우 별도의 안내를 드립니다.
위 사항 및 보험금 결정액에 동의하시지 않는 경우, 메리츠화재 소비자보호파트로 통보하시면 재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접수 : 홈페이지(www.meritzfire.com)에 접속하여 신청 / 전화상담 : 1566-7711(ARS 5번)
- 우편접수 : (06232)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82 메리츠화재빌딩 24층 소비자보호파트
- 보험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청구서류 접수방법

- 인터넷 / 모바일 접수 : 홈페이지 www.meritzfire.com / 모바일 앱 메리츠화재 공식앱
- 우편접수 : (14623)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80 메리츠화재빌딩 6층 사고접수팀